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2017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목 차 -

1.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관련	3
2.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 방법	7
3.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 시간	9
4.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방법 및 인정범위, 교육일지 양식	19
5.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강사기준과 외부위탁 가능 여부	25
6. 산업안전보건교육시 교육내용 및 교육자료 이용 방법	26
7 산업안전보건교육 Q&A	

※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7-5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향후 고시개정시 변동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사업(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의 일부 적용 받지 않으며, 제31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어 교육대상여부의 확인을 위해 아래의 방법을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_검색_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일치 여부 확인
 - ※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앞 두자리 중분류 업종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대상 사업”명과 일치
 - (예시)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75120 인력공급업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업종으로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접속 방법 참조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확인된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의 교육대상여부 확인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접속 방법(http://kssc.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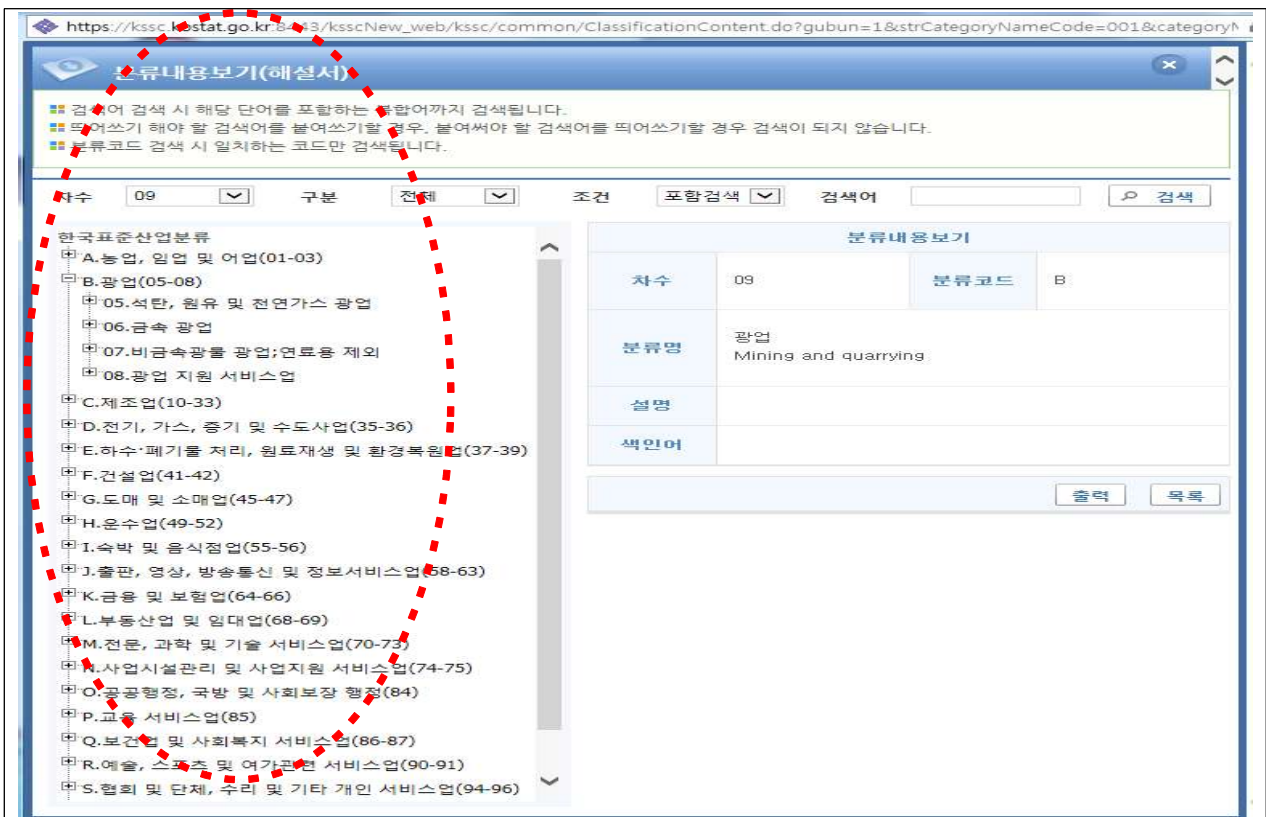
1. 통계청 홈페이지 접속



2.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한국표준산업분류 클릭



3.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클릭



4.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내용보기(해설서) 클릭

[참고자료] 산안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3장, 제23조,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 제34조의5, 제36조의4, 제39조, 제39조의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마. 삭제 <2016.2.17.> 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사. 녹음시설운영업 아. 방송업 자.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다. 국제 및 외국기관	법 제2장, 제3장,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5.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법 제2장, 제3장,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2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각종 피해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칭 사례

-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
 - * 주로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참칭
 -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함

□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

-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 우리부에서는 해당기관의 사기 시도 내용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임

□ 예방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2016.10.28.부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교육”으로 검색하시면 빨리 찾을 수 있음) 참조

The screenshot shows the MOEL website interface. The search bar at the top contains the text '안전정보 공표목록' (Safety Information Disclosure List). The search results table is as follows:

공표항목	공표내용	공표시기, 주기	공표형태	공표부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현황	기관명, 지정관서, 지정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	수시	문서	산업안전과 (044-202-773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결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	연1회	문서	산업안전과 (044-202-773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수시	일반	산업보건과 (044-202-774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_정보공개_사전정보공표목록_산재예방/보상_“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검색

산안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맞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간 만큼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교육 실시

※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①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 특별교육이수자는 신규 및 작업내용변경교육, 관리감독자는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해당업무에 유경험자는 신규채용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단기간작업과 간헐적작업이란?

- 단기간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작업이란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및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 [시행규칙 별표8의2 내용 참조]

※ 안전보건교육의 특례(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 참조]

○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 시간 요약표

대상 교육	면제 조건	면제 시간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한 경우	교육이수 시간
정기교육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 관련 교육 실시 경우	교육실시 시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참여한 경우	참여 시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이수 시간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사업장의 당해 연도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 시간 50%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검사원 양성교육, 전문화 교육, 통신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 시간
채용시의 교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한 경우	채용 시의 교육시간 50%
	고용노동부장이 실시하는 4기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일용직 근로자 신규 채용하는 경우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의 교육시간
	채용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채용시 교육시간 면제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1.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 교육시간 50%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 교육 면제

[참고자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6. 10. 2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분기 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 ①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 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61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④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체험교육장에 실시하는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⑤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⑥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의 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채용 시의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 규칙 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이하 “특별교육대상작업”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⑧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⑨ 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2.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3.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⑩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기간·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규칙 별표 8의2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일반검진 및 교육 실시 관련 사무직/기타직 구분

1 사무직 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의 구분

①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구분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음
 - (1)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
 - (2)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

② 업무(직종)에 따른 구분

-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

☞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경우 그 주된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주로 수업 및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반교원의 경우는 사무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 이공계 실습 등 육체적인 근로를 주로 하는 실습교사나 기능강사는 비사무직 근로자(기타직)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예시) >

사무직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등 직접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 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 전담상담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근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근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종사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종사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업 종사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설계사, 제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관리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관리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 위의 기준으로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13호 (2015.9.24.))를 참고하여 사무직과 비사무직(기타직)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임(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를 보고 판단)

* ILO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근거로 직업분류를 국내실태에 맞도록 표준화된 한국표준 직업분류를 제정·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구분	비고
1. 관리자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 전문서비스 관리직 -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사무직 * 장소적 구분, 실제업무 등을 사무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기타직으로 구분함이 타당	○ 주된 업무가 사무실 내에서 행정·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직으로 분류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분류할 필요)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사무직 * 장소적 구분, 실제업무 등을 사무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기타직으로 구분함이 타당	○ 주된 업무가 사무실 내에서 문서 및 행정,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직으로 분류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분류할 필요)
3. 사무종사자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금융 및 보험 사무직 - 법률 및 감사 사무직 -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사무직 * 장소적 구분, 실제업무 등을 사무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기타직으로 구분함이 타당	
4. 서비스 종사자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비사무직 (기타직)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구분	비고
5. 판매 종사자 - 영업직 - 매장 판매직 -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축산 숙련직 - 임업 숙련직 - 어업 숙련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 가공관련 기능직 -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 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 기타 기능 관련직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9.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구분	비고
-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10. 군인 - 군인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무직/비사무직(기타직) 구분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구분(사무직/비사무직)하여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건강검진) 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 또한, 위의 구분방법은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및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미준수에 따른 벌칙 적용시에는 근로자의 직종구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 근로자의 직종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실시 방법) 사업주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면 됨. 다만, 특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1/3범위에서 실시해야 하며, 인터넷 원격교육의 기준은 고용부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하여 실시해야 함.

(인정 범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법상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교육시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에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을 교육시간에 포함해 주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참여하게 한때도 해당시간을 교육시간에 포함하여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 일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일지 및 양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교육실시 여부를 서류나 전산 등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됨

※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

※ 안전보건교육 일지양식(예시)

-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실적 확인방법을 변경(기존의 서류확인 → 근로자 인터뷰를 통한 성과측정)을 통해 허위 안전교육 적발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1단계) 현장 근로자 무작위 인터뷰 → (2단계) 인터뷰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실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 → (3단계) 서류의 허위 작성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명령

☞ 사전 예방조치(안전작업절차,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등) 및 사후 피해 확산 방지조치(위험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등)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중독사고, 폭발사고, 직업병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를 중점 확인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

구분		요건	
① 원격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교육내용 및 교재 작성자를 포함)	자체 교육	• 규칙 제33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에 적합한 자	
	위탁교육	• 영 별표 6의3에 따른 안전보건위탁교육기관의 강사기준에 적합한 자	
② 교육생학습관리시스템	교육생모듈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생학습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교육생 유의사항 및 학급(또는 강의)당 정원이 등재되어 있을 것 •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교육 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1일 진도제한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에서 이루어질 것 • 교육목표, 학습평가보고서 양식, 출결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 모사답안 기준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 등을 교육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수강 신청	• 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평가 및 결과 확인	• 시험, 과제 작성 및 평가결과(점수, 첨삭내용 등) 등 평가 관련 자료를 교육생이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교육생 개인 이력 및 수강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생의 개인이력(성명, 소속, 연락처 등)과 교육생의 학습이력(수강중인 교육과정, 수강신청일, 학습진도, 평가일,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수료일 등)이 교육생 개인별로 갖출 것 •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 교육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 집체교육(100분의 80 이하)이 포함된 경우 웹상에서 출결 및 교육생관리가 연동될 것 • 교육생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질의 응답(Q&A)	• 교육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구분		요건	
	관리자 모듈	교육과정의 진행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별 제출일 등 교육진행 상황이 기록되어 있을 것
		과정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시험)는 교육생별 무작위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것 평가(시험)는 평가시간 제한 및 평가 재응시 제한기능을 갖출 것 교육참여가 저조한 교육생들에 대한 학습 독려하는 기능을 갖출 것 교육생 개인별로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기능을 갖출 것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현황, 평가결과, 참석지도 내용, 교육생 IP등을 웹에서 언제든지 조회·열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모사답안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교육생의 모사답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교강사 모듈	교강사 활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참석지도가 웹상에서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참석지도 일정이 웹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③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자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등을 갖출 것 교육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위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등을 갖출 것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3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IDC에 입주한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단, 우편통신교육에는 적용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자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절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구분		요건	
	위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절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 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 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20개 이상 확보할 것 (단, 우편통신교육에는 적용하지 않음) 	
	네트워크	자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단, 사내 인트라넷만을 이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위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 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 여러 종류의 교육용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할 것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를 갖출 것 • 원격교육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교육생모듈, 교육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④평가 및 수료기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는 시험, 과제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 • 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명기되어 있을 것 • 평가는 문제은행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의 성격에 맞춰 적절한 출제유형을 사용할 것 • 평가는 적절한 문항수로 구성할 것 •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과제는 학습을 실시하여 교육생에게 통보할 것(교육생학습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수료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기준이 학습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것 	

【안전보건교육 일지양식(예시)】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교육 담당	검 토	대표 이사
작성일자 : 20 . . . 작성자 :							
교육 구분	가. 정기교육 다. 작업내용 마.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바. 기 타()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별표8]참조							
교육 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교육 과목							
교육 내용							
교육 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실시장소			비고	
특기 사항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NO	직 책	성 명	서 명	NO	직 책	성 명	서 명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교육사진>

<사진1>

<사진2>

(강사 기준) 사업주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다음의 강사를 활용하여야 함.

1.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 강사와 등급이상의 사람
2.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인 사람
3. 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작업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외부 위탁)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직접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능 함.

또한, 2016.10.28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어 공단을 포함한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산재예방/보상>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등록현황에서 “교육”으로 검색하시면 빨리 찾을 수 있음.

그 외,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안내 대표번호(1644-2275)로 문의하시면 공단의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음.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1.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교재 및 교안)를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보급하는 책자 및 홈페이지 안전보건자료실 게시된 다양한 자료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자료 검색 및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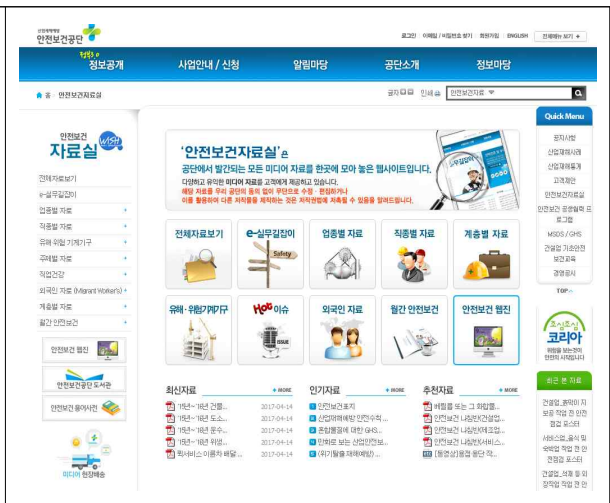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각종 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자료실에는 분야별로 업종별, 직종별, 유해·위험기계기구별 등과 형태별로 OPL, 동영상, 포스터, 표지 등 다양한 형태로 각종 자료들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니,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 찾아가는 방법 >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_정보마당_안전보건자료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_정보마당]



[안전보건자료실]

- 관련 문의사항은 안전보건공단 대표전화(☎1644-4544) 및 홈페이지에 표시된 담당자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별표 8의2] <개정 2016. 10. 28.>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교육내용)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p><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작업</p>	<p>다목과 같은 내용</p>
<p><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접 흡,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 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p>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착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숲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p> <p>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p> <p>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p> <p>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2. 목재가공용 기계(동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동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굴착은 제외한다)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p>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p> <p>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p> <p>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p> <p>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p> <p>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공센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34. 맨홀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7. 로봇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8. 석면해체·제거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37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교육 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다.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p>마. 석면조사기관 종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비산방지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 실무에 관한 사항
<p>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검사원 양성교육내용(제43조제2항 관련)

설비명	교육 과정	교육내용
프레스 및 전단기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프레스 및 전단기 개론 ○ 프레스 및 전단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크레인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크레인 개론 ○ 크레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리프트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리프트 개론 ○ 리프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설비명	교육과정	교육내용
곤돌라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곤돌라 개론 ○ 곤돌라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국소배기장치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산업보건 개요 ○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검사원 직무
원심기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원심기 개론 ○ 원심기 종류 및 구조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화학설비·압력용기 및 그 부속설비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화학설비·압력용기 개론 ○ 화학설비의 종류, 구조 및 특성 ○ 화학설비·압력용기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이상 시 응급조치

설비명	교육과정	교육내용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건조설비 개론 ○ 건조설비 종류 및 구조 ○ 열원의 위험성 및 성질과 상태 ○ 검사기준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롤러기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롤러기 개론 ○ 롤러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사출성형기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 사출성형기 개론 ○ 사출성형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제92조의6제1항 관련)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교육기관

"시설 및 장비"는 전용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①자체 소유한 건물로 사용상의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태를 말하며, ②임차한 경우에도 건물주와 사용상에 아무 제약 없이 계약한 경우를 말함
 - 특정 일자를 사용하는 조건 또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강당 등은 “전용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어 등록 시 인정할 수 없음
- 장비의 경우에도 동일함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등록된 사무실을 위탁교육기관의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는 지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위탁교육기관은 인력·시설 등을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각 각 별도의 인력과 시설기준을 준수해야함.
- 다만, 사무실 면적이 충분히 넓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은 사무실의 면적이 위탁교육기관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사무실 면적을 초과하고 명확히 교육사무실 및 강의실등이 구분(파티션등으로) 되어 있다면 공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위탁기관을 등록시, 기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과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경우 교육업무간의 인력 겸직과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의 경우 다른 업무와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에 필요한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으로 등록하게 되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시설은 함께 사용 가능)
-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산업안전공단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지회와 지역본부까지 하면 교육기관 인력이 총 90명쯤 되는데, 한꺼번에 서울청에다 등록하고 인력변경이 생길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자체 증빙서류만 교육기관이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 주된 사무소 1곳만 교육장과 시설·인력기준을 등록하여도 됨. 그러나 지회, 지부도 운영하려면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법적기준에 맞추어 갖추고 있어야 하며(해당기관에서 제출한 인력자료는 참고만하시면 됨),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기관 전체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온라인 교육만을 실시 할 수 있는 기관 요건이 있는지

- 온라인교육만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제32조제3항(직무교육위탁기관) 및 시행령 별표 6의3과 시행령 별표 6의5에 규정된
- 인력,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한해 교육할 수 있음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공단”이 빠져있는데 “공단”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지

- 공단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제 24조에 따라 당연히 교육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제 24조>
① 공단은 규칙 제 33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온라인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실시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인터넷 원격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3항에 ① 원격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②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 ③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 ④ 전산시스템, ⑤ 평가 및 수료기준이 명시된 엄격한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에 따라야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같이 법상 의무 교육을 근로자가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받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사무실과 강의실이 떨어져 있는 것은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사무실(연면적 30제곱미터)과 강의실(연면적 120제곱미터)은 같은 건물에 있어야 함. 다만 떨어져 있는 경우라도 현장실사를 통해 바로 인접하고 있어 사무실과 강의실간의 이동이 불편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담당자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음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강의실 면적이 117.9제곱미터의 강의실을 가지며 12제곱미터의 면적의 강의접수, 커피 등 다과를 먹을 수 있는 곳을 포함한다면 가능한지

- 강의실 면적은 순수하게 강의에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준비, 접수 등의 부대시설은 면적에서 제외 됨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 시 같은 건물에 층을 달리하여 강의실을 2개로 하여 면적의 합을 120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면 되는지

- 시행령 별표6의3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에는 강의실 기준이 연면적 120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 면적 개념은 합산해서 해당 면적이 120미터가 넘는다면 등록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강의를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이 되어야 함.
예를 들어 소규모 강의실 수개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질적인 강의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석면조사 등과 회사의 형태 또는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와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전인지 후인지

-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라 함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 등과 같이 「산업」과 관련한 업무로서 「산업보건」, 「산업위생」분야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리키며, 실내공기질, 대기, 수질 등의 환경분야 대행업체에 재직 중의 경력은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에 해당하는 실무라고 보기 어려움

등록된 인력(총괄 1명, 강사 2명) 외 추가적으로 외부강사를 두고 교육을 실시해도 되는지, 그리고 출장교육은 교육계획 수립을 해당 지부에서 하고 장소만 별도로 갖추어 주기적으로 12회 이상 실시한다면 출장교육으로 보기 어려운지

- 등록된 인력(총괄 1명, 강사 2명) 외 추가적으로 외부강사를 두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강사요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함
- 출장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사업장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강사 인력을 출장시켜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곳(사업장 또는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호텔, 콘도 등)에서 해당업종에 맞는 교육과정을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전국적으로 출장교육하는 것도 가능함.
 - ※ 관련 별표6의3 1. 공통사항 나항 “이 경우 등록된 시설 외의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강의실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동일 장소에서 강사가 상주하여 주간 또는 월간 정기적으로 교육운영하는 경우)은 출장교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력, 시설기준이 갖추어지지 않은 출장소등에서 출장교육을 시키는 것은 교육위반이 됨
 - ※ 관련 별표6의3 1. 공통사항 다항 “위탁교육을 하기 위한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변경신청 할 경우, 변경이 발생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해야 하는 것인지

- 등록증의 변경사항만 변경등록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즉시라고 보시면 됨.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른 지정·등록 기관관리와 동일하게 적용

□ 교육내용

직군은 크게 관리직(인사,총무), R&D(연구직), 사업부(영업직)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연구직·영업직도 사무직으로 보고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도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미준수에 따른 벌칙 적용이 되므로 근로자의 직종구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
 - 근로자의 직종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사업자에서는 먼저 장소적 구분에 따른 구분을 적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직종)에 따른 구분 방법을 적용함
-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으로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으로 구분하며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으로 구분함
 - “같은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다음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음
 - (1)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
 - (2)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

특별교육대상인 인화성 유기용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물질은 시행규칙 별표8의2 라목의 작업명에 제4호와 제36호에 해당하는데 교육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은 화학물질 수가 아니라 대상 작업별로 공통내용 8시간과 개별내용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개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는 업체라면 공통작업은 1회만 하는 것으로 족하고, 추가로 8시간의 개별교육만 실시하면 됨
(예: 고압실내 작업(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통작업 8시간 + 고압실내 작업(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8시간)등 24시간만 하면 됨)
- 다만, 어느 하나의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이라면 2시간만 하면 되므로 그 경우 18시간(16시간+2시간)만하면 족함
 - 단기간 작업* : 2개월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시험연구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며 조직의 고정 및 조직(검체) 살균, 소독으로 사용되는 포르말린(CAS No 50-00-0)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이란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이윤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제외한 연구실내에서 연구 및 시험 등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것을 말함
- 이 경우 통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런 연구활동 외에 연구원이 아닌 일반근로자가 통상적, 반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으로 볼 수 없음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 폭발성·물반응성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MSDS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MSDS에 교육대상과 관련된 위험성이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교육을 실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의사나 간호사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20조 2.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에 따라 2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직무교육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중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해당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자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비록 조문 상에 없더라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온라인 원격교육시 업종에 관계없이 수강해도 무관한지?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해당 업종에 대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타 교육기관의 인터넷 원격교육 과정등을 확인하여 업종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여러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모아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부적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음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분기별 6시간 교육),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분기별 3시간 교육)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동 규칙 별표 8, 별표 8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위험, 표준안전작업방법, 안전사고사례 및 산재예방대책,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 귀부 소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내용 중 안전관련 제 규정,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비상시 응급조치, 안전관리의 중요성,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한 때에는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시까지 작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신규채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거나, 변경된 작업내용이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면서 해당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임

또한 작업내용 변경이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업주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고 해당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위험작업 이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특별교육을 시킬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같음할 수 있는지와 특별안전교육 대상 직종의 정확한 구분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직종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작업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라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과 별표8의2에 의해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교육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에서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근로자 정기교육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부터 인터넷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구매하고 그 콘텐츠를 사업장에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한 인터넷 원격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와 별표 2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콘텐츠 자체는 별표2의 기준(작성자, 강의자)에 맞다면 자체작성하거나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별표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출압력이 $9\text{kg}/\text{cm}^2$ 이하인 공기압축기를 운전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 8의2의 특별교육 실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출압력이 $9\text{kg}/\text{cm}^2$ 이하인 공기압축기”의 정확한 게이지 압력을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 라목(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의해 압력용기의 경우 “게이지 압력이 $1\text{kg}/\text{cm}^2$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공기압축기가 동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시간은 정기교육 2시간 중 1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대상별로 일정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가. 목에서 규정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당 시간 동안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기 교육내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항목 중 건설업 관리감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반기 8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

- 사업장 내 정기교육은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만큼 당해 연도에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할 교육은 면제될 수 있음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1반 2대, 가공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의무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중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더라도 귀 사업장에 보유한 호이스트가 5대라면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대상자이던 자를 1년 전 1년 동안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신규교육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선임으로 볼 수 없음
- 지방관서에 변경선임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규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무직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함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 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엇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 항목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업장내에서 단기간의 지원업무 및 생산품의 수시 변동이 발생한 경우

- ①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의 근로자가 생산제품 및 생산공정은 다르나 유사장비나 유사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지원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의 종류
- ② 질의 ①의 경우 지원업무가 종료된 후 원소속으로 복귀시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 종류
- ③ 근로자가 과거 업무를 행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에 재지원해서 갈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는 작업부서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1호 라목이 규정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본 사안에서 새로운 B 작업장의 작업이 상기 **【별표 8의2】** 에 비추어 볼 때 A 작업장의 작업과 다르지 않다면 사업주는 A 작업장의 작업에 대하여 기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사항을 재교육할 의무가 없음.

□ 교육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채용시 교육실시가 필요한데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아 고용 기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고용시 마다 채용시 교육을 해야하는지

- 건설업의 경우 법 제 31조의2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그 외 업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1시간 채용시 교육만 실시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할 때마다 채용시 교육을 다시 실시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은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만을 실시하므로 해당 교육시간은 일용근로자로 사용할 때 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6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시 교육을 1/2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됨

타기관(대학)과 협력사업으로 공동 교육 개최시 수수료증에 두 기관 명칭을 기재하여 수수료증을 배포해도 되는지?

- 타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또한 두 기관 명칭을 기재해서 수수료증을 배포할 수도 없음.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제 3조 제 1항을 보면 “특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한사람이 4가지 특별작업을 진행할 경우 몇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 4가지 특별작업을 한분이 하게 될 경우 공통교육 8시간 + (작업별교육 8시간 * 4) = 40시간
 -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인터넷으로 교육시 1/3까지만 실시할 수 있으며 40시간 중 1/3인 13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27시간은 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함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서 24시간 집합교육을 이수하면 해당년도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여부와 별도 서명 등을 보관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정(집체교육과정에 한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분기를 초과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내에 실시한 교육시간으로 인정됨
- 예를 들면 24시간 집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분기당 6시간 실시해야하는 연간 근로자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잡은 파견, 출장 등으로 온라인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수료를 받으면 노동부에서 인정이 되는지와 무료 환급 교육이 가능한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제5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원격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교육을 받으신 해당 분기, 해당 시간만큼 교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교육은 단순한 무료교육이 아닌 사업주께서 납부하신 고용보험료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사업주 지원금에 해당)가 대부분임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때 모바일 시청도 가능한지

- 원격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일 경우 모바일로 교육하는 것은 작업 중 근로자가 모바일로 교육을 받을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작업 시작 전 10분 교육용 콘텐츠**” 교육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같이 법에서 정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근로자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함

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 상기 고시의 별표2의 기준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기준만 만족시킨다면 플랫폼, 서버 등을 임대하여 사용가능한지와 원격교육의 교재나 콘텐츠의 경우 자체제작이어야 하는지

- 플랫폼, 서버 등의 구비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임대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교재 등 교육자료의 관리, 수강생 관리, 평가, 질의응답, 과정운영, 모니터링, 교육 결과의 보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함
- 교재를 직접제작하거나 구매하여 사용가능하며 [별표2] 제 1항에 따른 적합한 작성한 교재이어야 하며, 원격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도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함

동일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A”라는 구역에서 운반작업을 하던 자가 “B”라는 구역으로 이동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동일장비로 생산제품을 달리하였을 때 교육실시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설비의 변경이나 작업장소의 이동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 기계설비나 작업장소 및 생산제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상술한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근로자가 A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내의 B협력회사에서 작업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교육을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경우 당해 조항의 위반여부

- 작업지시와는 별도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할 실시된 교육은 해당월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제4항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사업장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단체행동으로 인해 위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로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생산손실 등을 사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사업주는 귀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참여, 연·월차의 사용,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정기교육은 작업 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에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부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등의 부서의 장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가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별 별도의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사업장별 구분실시, 교육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해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현재 당사가 실시하는 월 2시간의 부서 단위별 정기안전교육(주 15분씩 4회 총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시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이 없을 시 별도 1시간)과 관련, 노동조합은 전체인원(300~400명)에 대한 집체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는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개별근로자에 대해 실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일시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 교육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서명 날인 대신 참석자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첨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정기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교육 의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 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별도의 채용시교육(8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라면 별도의 채용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한과 특별안전·보건교육 주기는 ?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교육은 각각 당해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함
-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면 됨

생산공장·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전국 450여개의 영업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 자동차 국내 영업본부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빌딩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지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는데, 국내 영업본부가 해당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귀사 영업지점들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내 영업본부가 당연히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전환교육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사무직 인원이 과거 투입된 해당직무의 직무전환교육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후 또다시 파업으로 인해 해당직무로 투입되는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직무전환교육은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 의해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교육 중 직무전환 등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 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거 투입되었던 사무직 인원의 현장 재투입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재실시 여부와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일상적인 업무전환을 6개월에 한 번씩 같은 직무를 맞교대(정기적인 직무전환)하는 경우 매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정기적인 직무전환에 따라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 작업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최초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이후 매회 동 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법에는 압력용기를 설치·취급하는 인원은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 설비가 철거되고 새롭게 압력용기가 설치되었다면 작업내용변경시 교육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와 신 설비가 설치되었다면 특별교육을 재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작업설비,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역시 작업설비, 작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으로는 새롭게 설치된 압력용기의 특성 및 작업내용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설비 및 작업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1.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 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 1.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가 적용되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2.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음

따라서 원청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갈 경우 안전교육은 출장지에서 하여야 하는지 안전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 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 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실시 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귀 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안전관리자의 참관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종료 후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 후 일정 점수 이상시 교육이수 인정)으로 신규채용 시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1/2매로 보고, 동영상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름

따라서 귀 질의의 시청각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면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교육강사의 참여없이(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단순히 PC를 이용한 시청각교육인 경우 이를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유지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해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경우 훈련 기간 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훈련 중인 자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고소위험공정작업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 이수한 근로자는 월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지

-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 유해 또는 위험작업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월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건설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별히 실시한 교육이 사업장의 정기교육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법령상에 규정된 교육내용, 시간, 강사의 자격, 교재 등이 적합한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외부 인력의 안전보건교육실적까지 당사가 통합해서 관리·보존이 가능한지 여부와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

-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실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교육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1. 신규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3. 신규근로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 건설업의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 해당이 없으므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함.

□ 강사 관련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중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현장교육시 별도의 강사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안전보건관계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말하며,
 - 그 외 우리가 통상 현장에서 안전보건관계자라 부르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경우에는 별표1의 강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

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실시할 경우 시행규칙 제 33조에 따라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칭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 사업장 내 강사에 대한 엄격한 별도 기준은 없고 다만,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3년 이상의 충분한 경력이 있으면 될 것임
 - 그리고 통상적으로 3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이 있으신 경우 강사로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 다수의 직군, 직종으로 구분된 대기업의 경우에는 직종, 직군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부서의 전문가 또는 전문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시행령 별표 6의3 2.나 강사 조건에서 6)호 항목에 산업안전보건분야라는 것에 대학교 교수로서 시스템공학을 가르치는 업무로 1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해당하는지?

- 학과의 명칭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를 참고하여 해당학과의 전공교육과목에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목이 48학점 이상 편성되었거나
 -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의 교육대상자별 관련 분야 석사, 박사의 학위는 위의 산업안전관련학과에서 관련 내용으로 취득한 학위를 말함
- 관련학과의 아닌 학과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취득한 학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산업안전분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기 시달된 “안전보건교육등록제시행지침”의 3페이지 및 12페이지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토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됨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을 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실시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을 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실시 한 것으로 인정됨

교육기관에서 지정인력 외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력을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 외부인의 강의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다만, 외부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경우 영별표 6의3의 강사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 직무교육위탁기준의 경우에도 영별표 6의5의 강사 기준에 부합해야 함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인력 중 경력이 지정등록된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니지만 강의한 경력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품질, 환경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하며,
 - 경력증명서상에 수행한 업무내용과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시행령 26조의10에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인력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총괄, 강사는 상근직원(근로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을 말하며,
 - 인력요건 외에 외부 전문가(강사기준에 준하는 사람)을 추가로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은 문제없음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요원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이고 강사선정 등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주체는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 등은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통하여 법 제31조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교육실시자 자격요건이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명시되어 있는 바 “당해 분야”의 의미는?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2호의 “당해 분야”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중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의미함

당해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노동조합 관련단체 소속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실시한 교육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가능한지?

- 사업주의 책임하에 귀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정기안전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요원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이고 강사선정 등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주체는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 등은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통하여 법 제31조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근로자 정기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노동조합 주관하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강사가 노동조합 기획위원(간호사면허증 소지)인 건강한 노동세상 자원임.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별표 1에 의한 사내 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면 됨

□ 교육대상

국가기관으로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며, 고유번호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실험실에서 연구개발 실험작업을 하는 국가기관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외대상인지?

- 공공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공공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 교육비 지원

용역업체를 통해서 협력업체에 1일 단위로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원도급업체에 교육비 지원 의무가 있는지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수급인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와 교육장소, 교육장비 제공 등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임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 경우는 동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은 교육장까지의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에 사용하는 비용도 협의체(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에서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법 제3조)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 적용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되,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여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반대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주된 부분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분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012.7.30)

2. 공공행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판단기준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는
 -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제3장),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법 제29조 중 제9항 제외한 규정), 안전보건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의 규정은 적용 제외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에도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를 제외한 통신, 보건, 교육 및 금융 등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에 따라 분류하며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해당 산업에서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지 않는 한 모든 규정이 적용 됨

□ 구체적 판단

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공공행정의 부수적인 업무인 경우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공공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특정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행정 업무를 위하여 수반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공공행정 영역에서 공공행정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공공행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에 따라 적용 규정을 판단함이 타당함
 - 예를 들어, 공공행정 기관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청소, 급식 등 행정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공공행정에 따른 적용범위를 판단

* 청사관리, 경비, 청사 직원 급식 등

- 다만, 공공행정에 보조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또는 근로형태가 행정업무와 현저히 다르고 ▲그러한 부문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으며

-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공행정과 분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사업 중의 하나로서 일반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사무가 아닌 통신, 보건, 교육 및 금융 등 현업인 경우에는 해당 현업의 산업분류에 따라 적용범위를 판단
 -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폐기물 관리 등 환경미화, 급식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적용범위를 판단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지정외 폐기물수집운반업
 - ▲건물청소 및 방역 →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 ▲학교급식 → 기관구내식당업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수된 업무를 도급한 경우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수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수급인이 위탁받은 업무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야 함
 -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방역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인인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범위를 판단

안전보건교육·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 관련

<17.2.2. 산업보건과>

□ 위탁교육기관의 주된 사무소(본사)와 교육원의 주소가 달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다른 경우

○ 교육기관이 별도의 조직으로서 교육전담인력*과 시설·장비를 주된 사무소(본사) 주소지와 다른 관할지역에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등록업무를 처리

* 교육계획수립·사업장 등에 대한 영업·강의 등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전담부서를 말하며, 교육전담인력과 시설(교육관련 사무실 및 강의실)은 동일한 장소에 있어야 할 것임(해당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을 기준으로 판단)

<1> 위탁교육기관의 등록 절차

○ 법인의 주된 사무소(본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A)에 등록신청 → 지방고용노동청(A*)은 서류심사를 하고, 해당 교육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지청(B)에 현장실사**를 의뢰 → 의뢰 받은 청·지청(B)은 현장실사 결과를 지방고용노동청(A)에 통보 → 등록증 발급(A)

* 주된 사무소(본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을 “A”라 하고, 교육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지청을 “B”라 함.

** 필요시(인접지역 등) A기관이 B기관에 현장실사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실사 가능

<2> 위탁교육기관의 점검(안)

* 자율점검표 : 인력·시설 및 장비·지회 및 출장소·교육실시 현황 파악

* 현장점검표 : 점검시 확인할 실무적인 사항 및 위반사항별 조치기준 명기

○ 본부에서 자율점검표 및 현장점검표 배포 → 지방고용노동청(A)은 등록된 교육기관에 자율점검표 발송·회수 → 자율점검표 내용 확인 후 점검대상 지회 및 출장소 파악 → 교육원, 지회 및 출장소를 관할하는 청·지청(B)에 현장점검의뢰 → 의뢰받은 청·지청(B)은 현장점검결과를 지방고용노동청(A)에 통보 →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A)